

계양구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정책지원관)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8일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채용직급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서	담당직무 내용
정 책 지원관	지방행정 주사보 (일반임기제)	2명	채용시 부터 1년	의 회 사무국	- 조례 제정·개정, 폐지 및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의원발의안 초안 작성 지원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하며, 업무 성과가 탁월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 3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
- 지역·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 (2002. 12. 31. 이전 출생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보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임용분야	임용	응시자격요건
정 책 지원관	지 방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행정, 지방자치, 기획, 법무, 감사, 조사 등 관련 실무 경력자 ※ <u>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함</u>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4. 보수 수준 및 복무관리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직급별 연봉 한계액 범위에서 책정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일반임기제 7급(상당)	63,693천원	45,237천원	주40시간(09:00~18:00, 1일8시간, 주5일 근무)

※ 신규 임용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복무관리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준용

○ 근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매년1회) 또는 수시 평가하여 근무기간 연장에 반영

5. 시험 방법

○ 1차 시험 : 서류 전형

- 응시자의 자격과 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정

○ 2차 시험 : 면접 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5항)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6. 시험 일정

응시 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2. 3. 22.(화) ~ 3. 25.(금)	2022. 4. 4.(월)	2022. 4. 13.(수) (예정)	2022. 4. 19.(화)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	

※ 공고기간 : 2022. 3. 8.(화) ~ 3. 22.(화)

※ 합격자 발표방법 : 계양구의회 홈페이지 (www.gyeyang.go.kr/open_content/council)
공지사항란에 공고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하며 상기 일정은 응시
인원 및 코로나19 상황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 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다운)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22. 3. 22. (화) ~ 3. 25. (금)

※ 4일간, 09:00~18:00, 가급적 점심시간(12:00~13:00)을 피해서 접수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4층)

○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자 신분증 지참(대리접수일 경우에도 응시자의 신분증을 지참할 것)
-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우편접수를 할 경우 계양구의회 채용담당(☎ 032-450-5803)으로 반드시 확인
전화 요망(등기송부 외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주소 : (우편번호 21088)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126(작전동)

계양구의회 4층 의회사무국 임기제 채용담당자

·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 분까지 유효한 접수 분으로 인정

·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 수수료 상당) 동봉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e-mail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8.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작성 후 제출 (이메일주소 ,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응시수수료 : 계양구 수입증지 7,000원 (6·7급) - 계양구청 또는 계양구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구입 - 등기우편 접수 : 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해당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 ※ 응시수수료는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수수료 환불	필수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상 경력은 경력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증빙 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A4용지 2매 내외, 경력 중심으로 작성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A4용지 3매 내외로 작성 ※ 임용예정 직위에서의 업무추진계획(방법, 일정 등)을 자유롭게 기술	필수
5. 서류전형 제출서류 양식 1부 (별지 제5호 서식)	○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한해서 작성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서)를 포함하여 제출 ※ 관련 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로 제출	해당자
7.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주민등록 초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시 초본 미제출 ○ 주민등록 초본 제출 시,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필수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확인서(서명필수) 1부	필수

구 분	내 용	비고
9.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서명필수) 1부	필수
10.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원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서류 또는 기재사항이 미비하여 경력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불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불명확한 경우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함) ※ 서식에 담당업무 등 기재란이 없을 경우 발급담당자에게 수기로 작성 받아 제출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 업무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당해분야임(근무사실확인서 등)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시간제 근무경력은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경력 인정)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필수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 발급, 경력기간 등재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 가능한 추가서류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 출력 가능	필수
12. 관련 자격증 증명서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제출 ※ 방문접수 시 반드시 원본 지참, 우편접수의 경우 최종면접 시 지참	해당자
13. 위임장 1부 (별지 제9호 서식)	○ 응시원서 및 서류제출 위임장(서명필수) 1부 ※ 대리접수 시 위임장 및 응시자 신분증 지참	해당자
14. 기타사항	○ 모든 서류는 제출서류 총괄표와 함께 제출	필수

9. 기타(유의)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 상기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재출 서류로 갈음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계양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일절 불가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양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 032-450-5803)